

2020년 보수총액신고 응원 이벤트!

전자신고 얼리버드(Early-Bird) 경품 행사

고용·안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행사 기간 보수총액 신고 2020. 2. 3.(월) ~ 2020. 3. 6.(금)
보험료 신고 2020. 3. 2.(월) ~ 2020. 3. 20.(금)

경품 스마트폰 3명, 태블릿PC 20명, 해피머니 모바일상품권 240명

- ▶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보수총액신고는 빠르고 편리한 [토탈서비스](#)로!!
- 자세한 사항은 토탈서비스 홈페이지(<http://total.kcomwel.or.kr>)를 참고하세요.
- ▶ '1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내역(종합소득세 신고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 이후부터 수시 확인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참고하세요.
- ▶ DM발송 신고서식, 회계 프로그램 서식, 콜센터에 재요청한 서식을 사용하시면 [QR코드](#)가 삽입되어
빠른 접수와 처리가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규모별 토탈서비스 분산 운영 안내

구 분	사무대행기관	사업장별 근로자수		
		30명 이하	31명~300명	301명 이상
파일다운로드	1.31.~ 2.15.	2.18.~ 2.22.	2.25.~ 3.4.	3.5.~ 3.8.
신고일	2.1.~ 2.22.	2.28. 이전	3.8. 이전	3.12. 이전

※ 토탈서비스 접속이 일시에 집중되어 전산과부하가 발생하여 이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위와 같이 파일 다운로드 및 신고일을 사업장 규모별로 분산하여 운영중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공정·윤리경영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부파·공익
신고는

-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고객소통 →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기명), 부조리 신고(익명)
-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부파·공익신고 → 공익신고 상담
- ▶ 국민 없이 110 또는 1398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사건 처리 : 044-200-7752~7761
-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 044-200-7772~7779



www.kcomwel.or.kr

고용·산재보험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 안내 신고기한 : 2020년 3월 16일(월)

Contents

보수총액신고 주요 안내	02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기	04
보수총액신고 서면신고하기	10
주요정보 및 정책 안내	16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며, 연간보수총액은 지난 1년간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합니다. (13P 참조)

●● 대표자(배우자)도 신고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자(법인대표이사 포함)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단,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취득)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 이미 퇴사한 근로자, 휴직근로자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연도중에 이미 퇴사한 근로자, 휴직한 근로자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된 근로자의 연간보수총액 기재시 휴직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수에 대하여 **산재는 제외, 고용은 포함**하여 연간보수총액을 기재합니다.



●● 보수총액신고란?

보험가입자는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0년 납부할 월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자가 없어도, 이미 퇴사했어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보수총액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산보험료 예상금액 확인은?

보수총액신고서 처리가 완료되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팝업존 - 보험료정보조회-정산보험료 예상금액조회]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인상에 따른 보수총액신고 안내

'19년 10월,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상됨에 따라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별 연간보수총액을 요율 변경 전, 후 **기간별로 분할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흥길동 연간보수총액 1천2백만 원일 경우, 변경전(1~9월) 900만원, 변경후(10~12월) 300만원 신고]
아울러 정산보험료는 요율변경 전, 후 각각 원단위 미만 절사하고, 이를 합산하여 월별보험료와 함께 고지됩니다.

※ 연도 말에 지급되는 상여금 등 근로제공 전체기간에 귀속되는 소득도 기간별로 구분하여 배분 후 신고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성실신고 안내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우리공단에서는 국세청 신고자료, 전년도 부과자료 또는 기준보수 등을 활용하여 **직권 부과 또는 부과고지사업장 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성실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시 불이익 안내

보수총액은 월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보수총액 미신고 시 월평균보수를 확정할 수 없어 **고용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특히,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수총액 신고기한이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니 신고기한까지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징수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안내

정산보험료가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단, 정산보험료 일시납을 원하실 경우 ⑪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에 체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⑨ 저장, 신고자료 검증, 접수

정보

임시저장 하시겠습니까?

정보

사전검증 결과 1건의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류 수정 후 다시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접수 하시겠습니까?

• 입력한 보수총액 내용을 저장합니다.

• 입력한 정보를 사전검증합니다.

• 검증이 완료된 자료를 접수합니다.

■ 오류 데이터이지만 접수는 가능한 오류입니다.
■ 접수가 불가능한 오류이며,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 입력한 정보 오류시 수정하여 재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⑩ 보수총액신고 접수현황 조회

화면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로그아웃 마이페이지 원격지원 사이트맵 화면돌보기 화면크기

사업장 [] 님 반갑습니다.

로그아웃 나의 민원

원격지원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프로그램 설치

마이페이지

보수총액 보험료신고접수현황조회

마이페이지 추가 키보드 사용자는 해당기능을 선택

작성방법 화면인쇄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 보수총액(수정)신고서, 보험료신고서에 대한 접수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다른 민원서류는 조회불가)

* 민원서류 상세내역(진행상황) 정보는 보수총액(보험료)신고 민원접수 접수기간(신고마감일 전후 5일)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민원 신고서를 접수상태로 입력 접수처리 했을 때도 불구하고 신고한 민원접수 내역이 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보수총액신고/보험료신고 민원접수 접수로 인하여 접수량 증가(파일전송시간 지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임을 알려드리니 시간을 두고(나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접수일자: 2020-01-01 ~ 2020-01-07 1주일 정수

세부조건: 검색조건 선택

총 조회건수 0건

엑셀변환하기

[2020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별 보험료율 확인 방법]

사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 · 예규 · 고시란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정보공개 - 자료실 - 실무자료 - 산재보험료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⑪ 토탈서비스 보수총액신고 경품행사 응모하기

접수완료

접수내역

접수번호: 보수총액 신고서

민원서류명: 신고일자: 신고인:

● 토탈서비스 얼리버드(Early-Bird) 경품행사 참여!!

경품행사 참여하기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비동의

※ 입력하신 정보는 경품당첨 안내 및 발송 등에만 사용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일절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제세공과금 신고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활용 등에는 필수사항입니다.
※ 당첨된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22%)은 당첨자 본인부담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검색]

[보험사무대행기관] 보수총액 일괄등록 신고 안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수임사업장 전체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보수총액입력 후 동 화면에서 일괄로 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총액 일괄등록

마이페이지 추가 키보드 사용자는 해당기능을 선택

작성방법 화면인쇄

* 서식구분과 보험년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Check

일괄등록 신고절차

- 1 [수임사업장별 신고대상자 전체 다운로드] 클릭하여 대상자 다운로드
- 2 1, 2번 양식에 신고한 사업장(근로자) 정보 입력하기
- 3 1, 2번 양식을 각각 불러오기 및 신고자로 접수
- 4 오류발생 시 파일수정 후 파일 다시 등록하여 접수
- 5 접수 버튼으로 일괄등록 접수완료

1회 신고 제한 건수는 100개 사업장(근로자수는 제한없음)

보수총액 일괄등록은 3월 1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단, 전산 하부여부에 따라 3월 15일까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업로드용 엑셀 양식】

【신고대상자 다운로드】

일반/자활 근로자 다운로드 일용/그밖의 근로자 다운로드 수임사업장별 신고대상자 전체 다운로드

서식구분: 보수총액신고서

보험년도: 2019 년도

보수총액신고서 근무지코드 조회하기

● 관리번호별 근로자수

순번 관리번호 일반근로자수 자활근로자수 보수지급액없음,일용/그밖의근로자 등록여부

토탈서비스
보수총액신고
경품행사 응모하기

접수완료 후
2020년 보수총액신고
전자신고 얼리버드(Early-Bird)
경품행사에 응모하세요



[보험사무대행기관]
보수총액신고
일괄등록

보수신고→
보수총액 일괄등록→
서식구분(보수총액신고서)→
업로드용 엑셀양식
(일반/자활, 일용/
그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신고 서면신고하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4서식]

[]산재보험 []고용보험 (2019년도) 보수총액신고서

※ 신고방법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매체(CD)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 신고 가능)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3.16(월)까지입니다.
팩스접수 : 0502-123-4567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작성자명 :		전화 :		처리기간 5일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산재 업종	(요율 :)		최종생산품() :						
						팩스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산재보험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 보험료 부과구분	⑩ (산재) 건설, 벌목업 근무이력자	취득일	상실일	② 연간보수총액(원)	③-1 근무지코드	취득일	상실일	③ 연간보수총액(원) (1월~9월)	③ 연간보수총액(원) (10월~12월)
1				Y()								
2				Y()								
3				Y()								
4				Y()								
5				Y()								
6				Y()								
7				Y()								
8				Y()								
9				Y()								
합 계												

④ (2019)년도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 (해당시 ✓ 표시)

※ 아래 박스 안에는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뒤쪽참조)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⑤ 산재보험	⑥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전체		⑥-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산재만 해당)	⑦ 월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⑧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1월~9월	10월~12월	1월~9월	10월~12월		기간(~)	기간(~)								
⑨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⑤, ⑥) 및 그 밖의 근로자(⑦, ⑧) 수(상용근로자는 제외)						⑩ (산재보험 업종), (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구 분 (아래 표시)	변경 전 기간(~)	변경 후 기간(~)	□산재 □고용

⑪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⑫ 정산후 과납보험료를() 선납충당, () 반환 (반환계좌:

은행, 계좌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의 5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서면신고하기 목차

① 보험료부과구분	12
①-1 (산재)건설, 벌목업 근무이력자	12
② 산재보험 연간보수총액	13
③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	13
③-1 근무지코드	13
④ 근로자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	13
⑤, ⑥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14
⑥-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14
⑦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14
⑧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14
⑨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⑤, ⑥)	
및 그밖의 근로자(⑦, ⑧)수	14
⑩ (산재보험 업종), (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15
⑪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15
⑫ 정산 후 과납보험료 충당 · 반환	15
⑬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조전임자”	15

※ 사업장 현황 : 산재·고용보험 성립사업장정보가 인쇄되어 발송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을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4서식]

[]산재보험 []고용보험 (2019년도) 보수총액신고서

※ 신고방법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매체(CD)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 신고 가능)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작성자명:	전화:	처리기간 5일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산재 업종	(요율:)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최종생산품():			

○ 작성자명 및 전화 : 공단에서 보수총액신고서 처리 시 연락 가능한 작성자명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장관리번호 등 사업장정보가 인쇄되어 발송됩니다. 다만, 사업장정보(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보험료부과구분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보험료 부과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설, 벌목업 근무이력자	취득일	상실일	②연간보수총액(원)	③-1 근무지코드	취득일	상실일	③연간보수총액(원) (1월~9월)
1			Y()								
2			Y()								

※ 보험료부과 구분부호 : 산재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중 일부 보험료 부과가 제외되는 근로자 구분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임체	실업급여	고안·직능										
51	O	O	X	X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항운노조원(임체부과대상)									
52	O	X	X	X	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항운노조원(임금체권부당금 소송승소)									
54	O	X	O	O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55	X	X	O	O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파견자									
56	X	X	O	X	별정직·임기제(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한시) 공무원,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58	O	X	X	O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가 틀린 근로자의 처리방법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정보를 정정 후, 새로운 보수총액신고서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총액신고서에 인쇄된 근로자 가입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처리요령

- 고용종료(상실)신고 누락근로자(18.12.31.이전 퇴사) : 고용종료(상실)신고서 제출→(처리완료)→보수총액신고
- 고용(취득)신고 누락근로자 : 고용(취득)신고서 제출→(처리완료)→보수총액신고

①-1 (산재)건설 벌목업 근무이력자

2019년도에 자진신고와 부과고지사업장 근무이력이 있는 근로자

※ 2019년도에 동일 법인(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내 자진신고사업장과 부과고지사업장에 각각 근무기간이 있어 산재보험 연간보수총액을 나눠서 신고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①-1” 항목 Y()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⑩의 계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⑪-11, ⑪-14, ⑪-15, ⑪-16, ⑪-31) 항목에 금액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적습니다.)

※ 휴업·휴직 및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합니다.(단, 휴직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

② ③ 연간보수총액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②연간보수총액(원)	③-1 근무지코드	취득일	상실일	③연간보수총액(원) (1월~9월)	③연간보수총액(원) (10월~12월)

②~③ (연간보수총액) 2019년도에 발생한 근로자별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2019년 10월 1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에 따른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기간별로 분할하여 신고

③-1 (근무지코드-우편번호) 신고연도 마지막날(보험관계 소멸사업장은 소멸일,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상실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중인 사업장의 “우편번호”를 적습니다.

■ 근무지코드 작성요령

- 본사에서 일괄 신고하는 경우 토탈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별로 각각 근무지코드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에는 본사 근무지코드를 기재하였으나, 본사 이외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근무지코드에 진하게 덧쓰기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지코드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한국고용정보원 콜센터(1577-7114),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④ 근로자 사용 및 보수 지급액 없음

④ (2019)년도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 (해당시 ✓ 표시)

④ 2019년도에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 등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이 전혀 없는 사업장은 팔호안에 체크(✓)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신고항목 입력 불요)

⑤ ⑥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일반사업장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⑤산재보험	⑥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전체	
		1월~9월	10월~12월

⑤, ⑥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2019년도에 고용한 전체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신고서식의 ②~③ 고용신고 및 보수총액을 신고한 상용근로자, ⑦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⑧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작성합니다.

⑥-1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⑤산재보험	⑥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전체		⑥-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1월~9월	10월~12월	1월~9월	10월~12월

⑤, ⑥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2019년도에 고용한 전체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⑥-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중 아래에 해당하는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가.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고용 개시한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나.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더라도 최종 근로일부터 근로공백이 10일 이상인 경우 그 이후부터 지급한 보수총액

⑦ ⑧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산재만 해당)	⑦월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⑧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⑦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보험 고용정보 미신고근로자(고용기간이 1개월이상 3개월 미만이고, 월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의 연간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자고용(취득)신고 및 보수총액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⑧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연간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연간보수총액(②, ③), 일용근로자 보수총액(⑤, ⑥, ⑥-1)과 구분하여 신고하는 항목으로 누락 또는 충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년도 그 밖의 근로자 월평균보수 =

전년도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전년도 사업장 보험가입 월수

⑨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⑤, ⑥) 및 그 밖의 근로자(⑦, ⑧) 수

⑨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⑤, ⑥) 및 그 밖의 근로자(⑦, ⑧) 수(상용근로자는 제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⑨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 2019년도 매월 말일 현재 고용하는 일용근로자, 월 60시간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수의 합계를 적습니다.

* ⑤~⑧번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②~③에 포함된 상용근로자는 제외)

⑩ (산재보험 업종), (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⑩(산재보험 업종), (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구분 (아래 표시)	변경 전 기간(~ ~)	변경 후 기간(~ ~)
□산재 □고용		

⑩ (산재보험 업종) 2019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이 변경된 경우, 연간보수총액 (②합계액+⑤+⑦+⑧)을 변경 전·후 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고용보험 직능요율) 2019년도 중 고용보험 직능요율이 변경된 경우, 연간보수총액 (③합계액+⑥)을 변경 전·후 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2019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 또는 (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 기간이 인쇄된 사업장만 적습니다.

⑪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⑪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

⑪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정산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팔호안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체크(✓)하지 않은 사업장 중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하여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고지됩니다.

*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은 「토탈서비스-빠른서비스 및 팝업존」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⑫ 정산 후 과납보험료를 ()선납충당 ()반환

⑫ 정산후 과납보험료를 ()선납충당, ()반환 (반환계좌 : 은행, 계좌번호 :)

⑫ (정산 후 과납보험료를 선납충당, 반환) 2019년도 보험료 정산결과 과납보험료가 발생할 경우 순위에 따라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을 원하는 경우 선납충당에 체크(✓)하고, 충당없이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환에 체크(✓)하고, 반환계좌도 함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사업장의 경우는 법인 명의, 개인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 명의 계좌로만 반환이 가능합니다.

⑬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⑬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신고서(※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관리번호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보험료 부과구분	①-1 (산재) 건설, 벌목업 근무이력자	산재보험			③-1 고용보험	③연간보수총액(원)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취득일	상실일	②연간보수총액(원)				
1			Y()								
2			Y()								

⑬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노조 전임자”의 연간보수총액을 기재합니다.(보험료 부과구분 부호가 54, 56, 58인 근로자만 별도 기재)

* 노조전임자의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미신고 또는 착오 기재된 경우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가 완료된 후 콜센터로 보수총액신고서를 재요청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01 2020년 1월 16일부터 고용보험 · 산재보험 보험료 퇴직정산제도가 시행됩니다.

■ 퇴직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부과고지사업장에서 2020.1.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용근로자(상실일은 2020.1.17. 이후인 근로자)

■ 신고방법

4대사회보험 공통서식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에 근로자의 상실일, 상실사유 및 지급한 보수총액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

■ 유의사항

퇴직정산 대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2019년(귀속) 보수총액에 한해서는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신고기한 : '20.3.16.까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2020년(귀속) 보수총액은 퇴직정산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므로, 자격상실 신고서에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반드시 기재

02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 ·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 안내

구 분	2019년	2020년	혜택
중 · 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금속제조업 등 12개 업종 국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전체 업종으로 확대)	업무상 사유로 부상 · 질병 등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급여 지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연월일로 부터 5년 이내 (사업자등록증 기준)인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 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특정 업종) 고유번호증 보유,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 보험가입 제한(실업급여 수급자) 구직급여 수급 2년 이후 보험가입 신청 가능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19. 7월 이후 개업연월일 관계 없이 보험가입 신청 가능)	실업급여(비자발적 원인으로 폐업하는 경우) 및 직업훈련 비용 지급

03 2020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안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 및 보건복지부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2020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0년)
지원보수 수준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지원율	신규가입자	80%(5명 ~ 10명 미만 사업)	~ 90%(5명 미만 사업)
	기가입자	40%	30%
지원기간		- '18. 1. 1.부터는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 합산)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 의 경우 지원받은 기간이 36개월 이내라도 '20.12.31.까지만 지원 ('21년부터 신규가입자에 해당될 경우만 지원하고 기가입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제한 기 준	근로소득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772만원 이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원 이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 ('19.12.31. 이전부터 지원받은 근로자는 2,520만원 이상)
재 산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사업규모 : 개인사업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
(단, 공동주택 관리사업은 각 사업장별로 판단)

※ 2019.1.1.부터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직접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04 「고용 · 산재보험 사무대행서비스」안내

공단은 사업주의 고용 · 산재보험 사무처리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무 · 세무 전문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하여 고용 · 산재보험 사무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주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신청절차]

(온라인)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사무대행업무 →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업장정보 입력, 사무대행 희망기관 선택 → 접수

(서 면) 보험사무대행기관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고객소통 → 민원/조회 → 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05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내용

-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상향 - 월평균보수 : 210만원 이하 →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까지
- 지원금액 조정 - 1인당 최대 월 13만원→9만원(5인 미만 : 11만원)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만55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300인 미만 사업주
 - 공동주택(아파트) 경비, 청소원,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은 규모 상관없이 지원
- 지원요건**
 -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월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휴폐업 사업주, 고소득사업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9만원 (5인 미만 사업장 최대 11만원)
 - 단시간 노동자, 일용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일수 비례 지원
※ 19년 지원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세부내역 등 신규 신청
- 신청절차**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EDI,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방문, 우편, 팩스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 같이 받으세요!〉**
 - '20년도에 5인미만 사업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60%경감
(5인 이상~10미만 50% 감면, '19년도 신규가입자는 10% 감면)
 - 4대 보험 신규 가입시 10인미만 고용기업의 사용자 보험료 50% 세액공제

06 제41회 문화예술제

“예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올해는 당신이 축제의 주인공입니다.”

총 시상금 1억,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

참가분야	가요	연극	미술	음악
신청기간	2020년 2월		2020년 7월	

※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http://www.workdream.net) '문화예술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 '18. 1. 1.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으로 노동자가 통상의 경로를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 ♣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 없으니 통상의 출퇴근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7 고용·산재보험 자격관리 신고기한

구 분	신고종류	기한	내용
자격관리	입 사	취득(고용)신고서	다음달 15일
	퇴 사	상실(고용종료)신고서	”
	휴 직	휴직등신고서	14일 이내
	전근(전보)	전보신고서	”
	정보 변경	정보변경신고서	성명, 주민번호 등 변경사항
	일 용 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다음달 15일

※ 취득신고서, 상실신고서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법정기한 이후 신고할 경우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7 고용·산재보험 증명원 발급서비스

조회방법	발급대상 서비스
①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 나인의 메뉴 → 신청·조회·발급 → 기관분류 선택(근로복지공단) → 22종 서비스 중 선택	① (고용) 피보험자격내역확인서(일용근로내역서 포함) ② (산재) 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②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신청·조회·발급) → 기관분류 선택(근로복지공단) → 22종 서비스 중 선택	③ 고용·산재보험료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④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원 ⑤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⑥ (보상)보험급여지급확인원 ⑦ (보상)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등

08 퇴직연금사업 안내

■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지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제도 어떤 점이 좋은가요?

- 기업도산에도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 제도설계 및 운용과정의 다양한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 적립운용방식의 선택 및 퇴직 시 연금VS일시금 선택 수령 가능합니다.
- 은퇴 시까지 충분한 수준의 노후 재원 보존합니다 : 이직을 하여도 퇴직급여를 인출하지 않고 세금혜택을 받으며 계속 적립·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대상

30인 이하 모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과 기업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PR) 제공)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1. 믿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2. 저렴합니다 : 낮은 운용관리수수료(0.1%, 자산관리수수료 별도)로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3. 간편합니다 : 복잡한 서식과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4.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은행, 삼성화재, 신한금융투자에서 적립금 자산관리를 합니다.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가입문의 ☎ 1661-0075 인터넷 검색창에



NAVER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